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권인순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23. 10. 10.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권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안 제3조)
-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4) 임신·출산 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 지원사업 (안 제9조)
-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 (안 제10조)
- 6)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7)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는 임신·출산 지원, 진로상담, 취업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사업을,
-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4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총 출생아 수는 260,562명으로 산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출생아 수는 8,099명이며, 이 중 서울시는 24세 이하 산모의 출생아 수가 624명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 관내 청소년부모 가구는 2가구임.

[2021년 기준 청소년 산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단위:명)

구 분	전 국	서울시
19세 이하	500	42
20~24세	7,599	582
계	8,099	624

※ 출처 : 통계청

- 현재 청소년인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은 ‘24세 이하 부 또는 모인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사실혼 포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청소년기에는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대다수로, 양육자로서 임신 및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학습, 교육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육아 및 자립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법적 측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

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2023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급 시기	비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자녀 1인/ 월35만원	매월 20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학원비(월30만) - 교재비(월20만) - 학용품비 (연9.3만)	수시 지급 (신청시)	국비50% 시비50%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교통비 - (월 3만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또는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가구당/ 월10만원	매월	
명절 격려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가구당/ 1회 5만원 (년10만원)	연 2회 (설,추석)	구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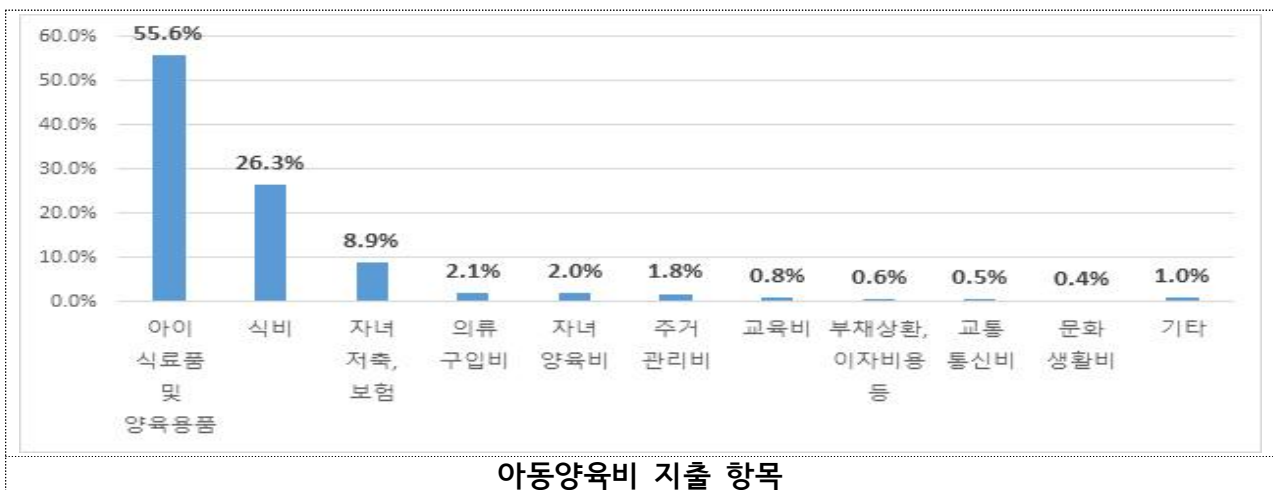
3.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중 아동양육비 효과성

분석 설문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조사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 설문

- ◇ (사업 인지 경로)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검색,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줌 순임
 - ◇ (아동양육비에 대한 생각) '금액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위해 저축·적금을 해야겠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다'는 느낌, '아동양육비 보다 각종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 순으로 높음
 - ◇ (도움이 되는 정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나에게',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각각 90% 이상임
 - ◇ (지원 후 변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후 변화에 대해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 (지출 항목) 지원금액 중 가장 많은 지출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였으며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지급액 수준은 '4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 (사업인지 경로) 동 사업을 인지한 경로는 구청 혹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검색(26.9%), 친구 등 지인이 알려줌(14.0%) 순임
 - (아동양육비에 대한 생각) 아동양육비에 대한 생각은 '금액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3.54점), '아이를 위해 저축·적금을 해야겠다'(3.21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다'는 느낌'(3.19점) 순으로 나타나 아동양육비 지원이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움이 되는 정도) 아동양육비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1.8%,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6.5%로 대부분의 사업 참여 청소년 부모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지원 후 변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후 변화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음
 - 그 외 응답으로는 ‘식비, 세금 등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22.2%),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여유가 생겼다’(5.2%) 순
 -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여유가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성년 시기에 첫 출산을 한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는 데에 큰 기능을 함.
- **(지출 항목)**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55.6%)이며, 식비(26.3%), 자녀 명의의 저축·보험(8.9%), 의류구입비(2.1%) 순임



- **(적정 지급액 수준)** 아동양육비 적정 지급액 수준에 대해 4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0%로 가장 높음
 - 이어 30만 원 정도(35.8%), 현재 수준인 20만 원(6.1%), 35만 원 정도(5.6%) 순이었음
 - 선호하는 지급 방식으로는 대부분(91.6%) 현금을 선택함